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5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서일준 · 이종배 · 김상훈

안철수 · 김소희 · 서천호

정동만 · 신성범 · 김은혜

성일종 · 임종득 · 엄태영

이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우자”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각각 "사람 또는 그 배우자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전명예수당은"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③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이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제7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8조의6제1항제2호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를 “배우자”로 한다.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

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를 “참전명예수당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제1항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약)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배우자”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 -----. -----. -----. -----. -----. -----. -----. -----. ② ----- ----- ----- 참전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지급한다.

<신 설>

-----.
③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이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

④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p>① 국가보훈처장은 <u>참전유공자</u>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u>배우자</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p> <p>② · ③ (생략)</p>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p>① ----- <u>참전유공자</u> 또는 그 배우자-----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배우자</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신 설>

第9條(묘지에의 안장) ① ~ ③
(생 략)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
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
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 ⑥ (생 략)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① 국
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
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第9條(묘지에의 안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참전명예수당의 1년분에 해
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하
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명
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葬祭
補助費)로 지급한다. <단서 삽
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참전유공자</u> 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 <u>참전유공자</u> 또는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 ----- ----- ----- ----- ----- ----- ----- ----- ----- ----- ----- -----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u>참전유공자</u> 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 ----- <u>참전유공자</u> 또는 그 배우자----- ----- -----.
③ (생략)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전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3. ~ 8. (생략)

② ~ ④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